

# 위험관리 NEWS LETTER

기업위험관리실  
2024 Vol. 01

## 포커스 리뷰

- 자연재난 분석 및 위험 전망 ① 산불
- ESG 정보 공시 동향과 물리적 리스크

## 정책 동향

## 법령 동향



더많은뉴스리뷰하기



# 포커스 리뷰

사회적 이슈 및 위험관련 사항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과 대응방안을 제안합니다.



## [자연재난 분석 및 위험 전망 ① 산불]

- '23년에는 596건의 크고 작은 산불로 축구장 6,992개 규모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특히 2~4월에 산불 피해가 집중됨
- 비교적 산불 피해가 적었던 충남과 전남에서 '23년 큰 산불 피해가 발생했고, 최근 10년간 산불 피해가 많았던 강원과 경북은 다른 연도에 비해 피해가 적었음
- 국내·외 기상 예보 자료를 종합해본 결과 '24년 2~4월에는 평년보다 따뜻하고,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120%에 달해 전국이 습윤한 상태이며, 이는 2~4월에 기상가뭄 발생이 없고 산불 위험이 비교적 낮을 것임을 시사함
- 다만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산불 피해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습윤하고, 산불 피해가 적었던 지역도 산림 인접 지역이라면 입산자 및 시설물 관리에 지속적 주의가 필요함

## [ESG 정보 공시 동향과 물리적 리스크]

- 최근 ESG 투자, ESG 경영 이슈가 지속되고 있으며, ESG 규제 및 제도의 구체화에 따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EU는 CSRD를 발표('23년 1월 발효)하여 EU 내 기업과 EU에 영향을 주는 非 EU 기업들에게 정보공시를 의무화 하였음
- 미국은 '22년에 입안될 예정이었던 SEC 기후공시 규칙의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ESG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ESG 공시 도입 시기를 '26년 이후로 연기할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국외 기준 발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최근 정보공시 항목 및 가이드가 발표되면서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분석 방법론이 연구되고 있음
- '24년에는 ESG 공시제도 연기에 따른 투자자와의 입장차이로 인한 분쟁이 이슈가 될 수 있으며, 공급망 실사 요구에 따른 공급망 관리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자연재난 분석 및 위험 전망 ① 산불

### 1. '23년 산불 피해 현황

#### ■ 연도별 산불 발생 분석

##### 연도별 산불 발생 분석 :

- 최근 10년 대비 피해 면적 증가

- 총 596건의 산불로 인해 '23년에는 4,992ha(축구장 6,992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 최근 10년('14~'23년)간의 산불 피해 현황과 비교해 보면 연평균 발생건수(567건)의 105%, 연평균 피해 면적(4,003ha)의 125% 수준으로 '23년은 비교적 산불 피해가 많은 해였다.
- 특히 '23년의 산불 발생 건수는 10년 평균('14~'23년)과 비슷하지만 산불 피해 면적은 크게 증가하여 '22년(24,797ha)을 제외하면 최근 10년 동안 산불 피해 면적이 가장 컸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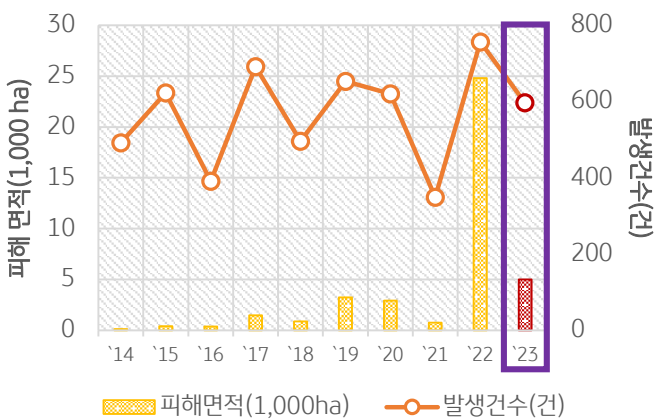
#### ■ 규모별 산불 발생 분석

##### 규모별 산불 발생 분석 :

- 소형 산불 피해 면적 증가
- 중형 산불 피해 면적과 발생건수 모두 증가
- 대형 산불 발생건수 증가

- 소형 산불(피해 면적 5ha 미만) 피해 면적은 10년 평균의 154%, 발생건수는 101% 수준으로 발생건수는 비슷하지만 피해 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 중형 산불(피해 면적 5~100ha)의 경우 최근 10년 대비 피해 면적은 3.1배, 발생건수는 2.5배 증가하여 '23년에는 비교적 중형 산불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대형 산불(피해 면적 100ha 이상)은 8건 발생하여 최근 10년 평균(3.2건) 대비 2.5배 증가하였지만, 피해 면적은 최근 10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 과거에는 1,000ha 이상의 초대형 산불이 종종 발생하였는데 올해는 1건(충남 홍성)만 발생하여 발생건수 대비 비교적 대형 산불의 피해 면적이 작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 전체 발생건수의 1%인 대형 산불은 전체 피해 면적의 76%를 차지하고, 발생건수의 93%를 차지하는 소형 산불의 피해 면적은 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연도별 피해 면적 및 발생건수



자료: 산림청

표1. 규모별 피해 면적 및 발생건수

구분		소형 산불	중형 산불	대형 산불
피해 면적 (ha)	'23년	232.3	990.7	3,769.2
	10년 평균	150.8	316.7	3,535.7
발생건수 (건)	'23년	555.0	33.0	8.0
	10년 평균	550.2	13.4	3.2

자료: 산림청



### ■ 월별 산불 발생 분석

#### 월별 산불 발생 분석 :

- '23년 2~4월에 대부분의 산불 피해 발생
- 5월 이후 피해 크게 감소

- '23년에는 산불 피해 면적의 98%가 2~4월에 발생하였고, 4월(3,882ha), 3월(867ha), 2월(166ha) 순으로 피해 면적이 넓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산불 발생건수도 2~4월에 집중(약 76%) 되었으며, 3월(229건), 2월(114건), 4월(108건) 순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2월과 3월의 산불 피해 면적은 최근 10년에 비해 비교적 적었지만(각각 62%, 37% 수준) 발생건수는 많았던 것(각각 145%, 162%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 4월의 경우 10년 평균(1,080ha)보다 피해 면적이 3.6배 증가하면서 '23년 전체 산불 피해 면적의 78%가 4월 한달 동안 발생하였다.
- 5월 이후 산불 피해 면적 및 발생 건수가 감소 하였는데, 5월에 내린 전국적인 강우와 장마철 집중호우가 산불 피해를 크게 줄인 것으로 판단된다.
- 11월의 경우 피해 면적이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1건(강원 양구)의 중형 산불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제외하면 최근 10년과 유사한 수준의 산불 피해 면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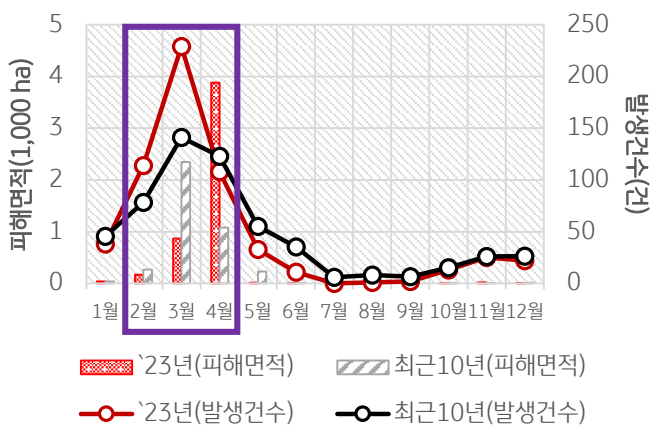
### ■ 계절별 산불 발생 분석

#### 계절별 산불 발생 분석 :

- 봄철 산불 피해 면적 및 발생 건수 증가
- 여름철 피해 크게 감소
- 가을철 피해 면적 증가 및 발생 건수 감소
- 겨울철 피해 면적 감소

- '23년 봄에는 10년 평균 대비 산불 피해 면적이 1.3배, 발생건수는 1.2배 증가하였다.
- 특히 100ha 이상의 산불 피해 면적이 발생한 대형 산불 8건 모두 봄철에 발생하였고,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담뱃불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장마철의 기록적인 강우(관측 이래 3번째 많은 강우량, 남부 지방은 역대 1위)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여름에는 최근 10년 대비 산불 피해가 크게 감소하였다.
- 가을에는 발생건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강원 양구에서 발생한 산불 1건으로 인해 피해 면적이 최근 10년 평균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 겨울의 경우 10년 평균의 116% 수준으로 발생건수는 비슷하지만, 대형 산불이 없어서 피해 면적은 65% 수준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림2. 월별 피해 면적 및 발생건수



자료: 산림청

표2. 계절별 피해 면적 및 발생건수

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피해면적 (ha)	'23년	4,763.8	0.7	20.4	207.3
	10년 평균	3,657.4	16.6	11.1	318.2
발생건수 (건)	'23년	370.0	12.0	40.0	174.0
	10년 평균	319.2	49.2	47.9	150.5

자료: 산림청



### ■ 시/도별 산불 발생 분석

#### 시/도별 산불 발생 분석 :

- '23년 충남과 전남에서 주로 산불 피해 발생
- 최근 10년간 피해 많았던 경북과 강원 피해 감소

- 비교적 산불 피해 면적이 크지 않았던 충남과 전남에서 최근 10년 대비 9배 가까이 피해 면적이 증가하여 '23년 가장 산불 피해 면적이 넓은 시/도로 조사되었다.
- 반면 최근 10년간 산불 피해 면적이 가장 넓었던 경북과 강원 지역의 경우 '23년에는 각각 10년 평균 대비 28%, 23% 수준으로 산불 피해가 크게 줄었다.
- 최근 10년과 동일하게 '23년에도 경기 지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산불이 발생하였고, 광주, 세종, 충남, 전북에서는 지난 10년 대비 2배 수준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 ■ 시/군/구별 산불 발생 분석

#### 시/군/구별 산불 발생 분석 :

- 서해안, 중·남부 내륙지역 '23년 산불 피해 크게 발생
- 최근 10년간 피해 많았던 동해안 인근 피해 감소

- 최근 10년 동안 피해 면적이 넓었던 지역(검정색 동그라미)은 주로 중부 동해안 인근이었는데, '23년 큰 피해(보라색 네모)는 서해안 인근과 중·남부 내륙지역에서 발생하였다.
- 가장 큰 피해 면적이 발생한 충남 홍성(1,337ha), 금산(909ha) 등의 서해안은 비교적 큰불이 자주 나지 않는 지역인데, 4월 초까지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산불이 연달아 발생하였다.
- '23년에는 충남 천안, 경기 화성, 여주, 세종 등에서 10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였고, 특히 경기 화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비교적 산불 발생건수가 적었던 지역에서 금년에만 산불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3. 시도별 피해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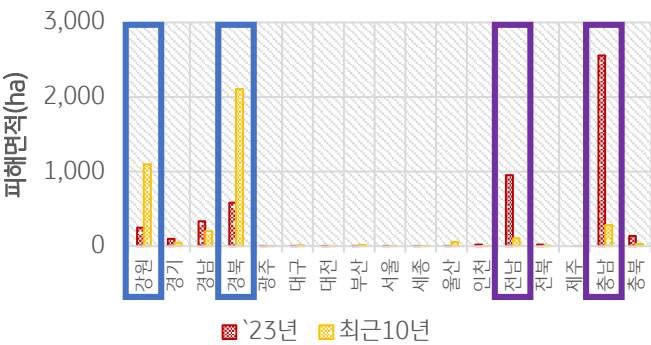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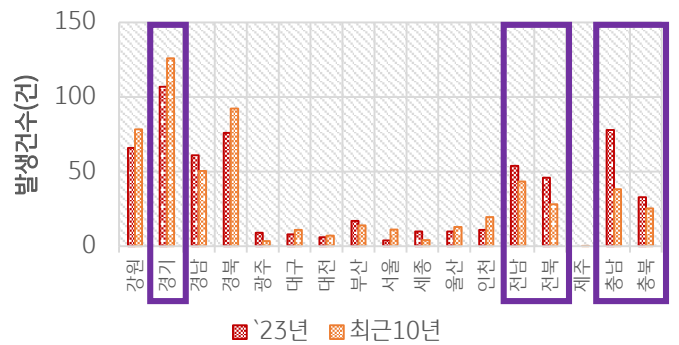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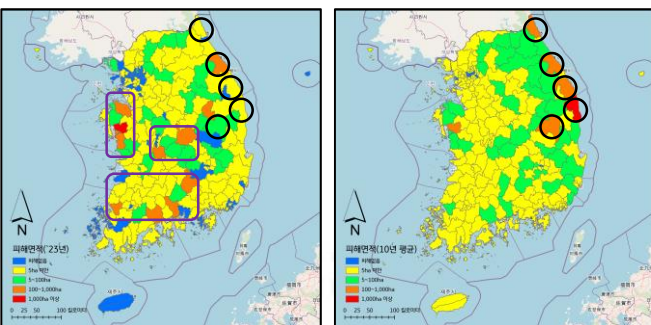


그림4. 시도별 발생건수



자료 : 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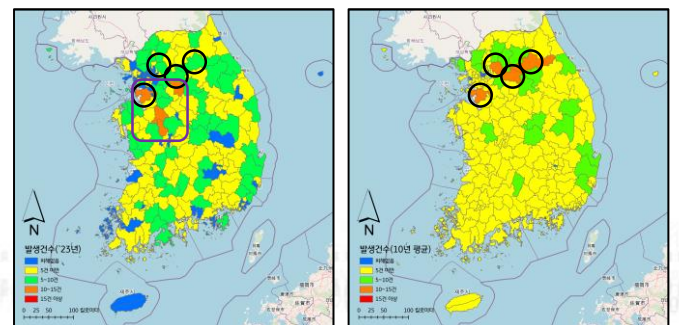
그림5. 시/군/구별 피해 면적 비교(좌: '23년, 우: 10년 평균)



자료 : 산림청

자료 : 산림청

그림6. 시/군/구별 발생건수 비교(좌: '23년, 우: 10년 평균)



자료 : 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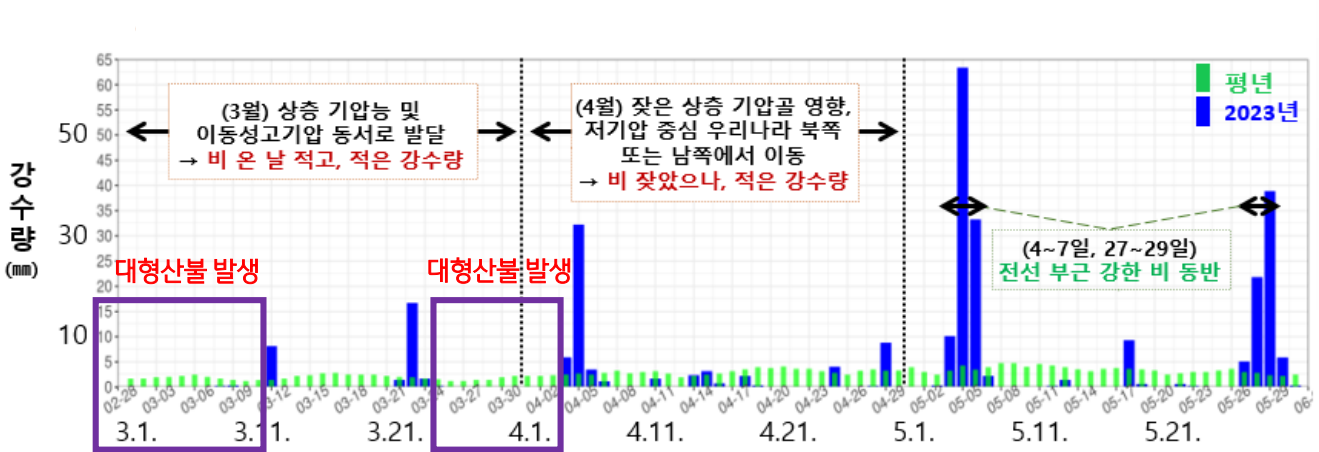
## ■ 기상 현상 분석

### 기상 현상 분석 :

- 역대 가장 따뜻한 날씨 속 연초에 비가 적게 내림
- 기상가뭄으로 건조해진 지역에서 4월 초에 산불 다수 발생
- 5월 전국적 강수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이후 산불 피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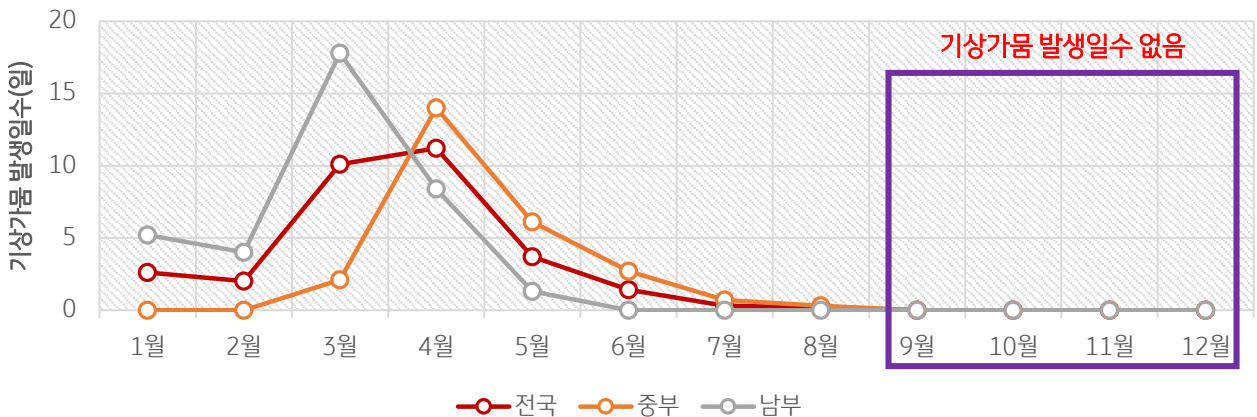
- '23년 봄철 전국 평균기온은 13.5°C(평년 대비 +1.6°C)로 역대 가장 높았고, 3월과 4월에는 비교적 적은 강수량이 기록되었다.
- 특히 '21년 겨울철 강수량 부족(평년의 14.7%)으로 시작된 '22년 봄철 기상가뭄이 '23년 여름철 남부지방의 적은 강수량(평년의 68.7%)으로 인해 '23년 봄철까지 이어졌다.
- 지속적인 남부지방의 기상가뭄<sup>1)</sup>과 2~4월의 강수량이 적어서 발생한 중부지방의 기상가뭄으로 인해 건조한 상태에서 강한 바람까지 겹치면서 비교적 산불 피해가 적었던 충남, 전남 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특히 4월 2일부터 4월 4일 사이에 충남 홍성, 금산, 전남 함평, 순천, 강원 고성, 강릉, 인제, 경북 영주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가용헬기를 총 동원함에도 불구하고 헬기가 가지 못하는 지역도 있어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 5월에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비가 전국적으로 내렸고, 장마철 동안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기상가뭄이 해소되면서 산불 피해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7. '23년 봄철 전국 강수량 분포도



자료: 기상청

그림8. '23년 월별 기상가뭄 발생일수



자료: 기상청

1) 기상가뭄: 일정기간 평균 이하의 강수량이 지속되는 현상



## 3. '24년 산불 위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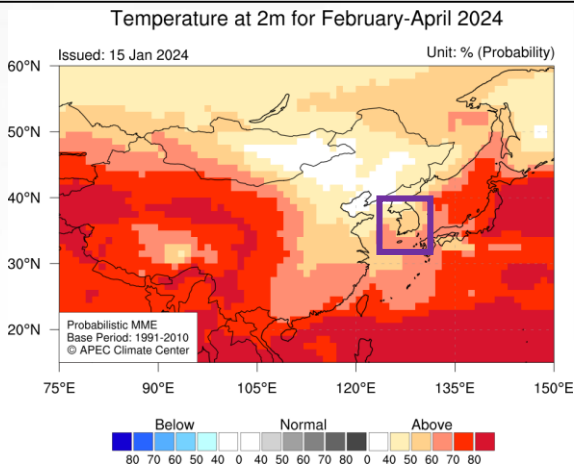
### ■ 기상 전망

#### 기상 전망 :

- '24년 2~4월의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비슷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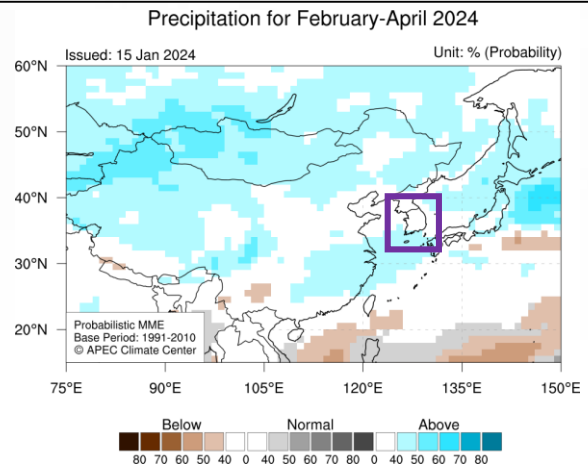
- APEC기후센터(APCC)와 기상청 예보 자료를 통해 주로 산불 피해가 발생하는 2~4월에 대한 기상 전망을 수행하였다.
- 전세계 15개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모델 결과를 제공하는 APCC에서는 '24년 2~4월 동안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국내 기상청에서는 2월, 4월의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 또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 3월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을 예측하였고, 강수량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국내·외 기상 예보 자료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2~4월 동안 비교적 기온은 높지만, 작년처럼 비가 적게 와서 산불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9. 2~4월 동아시아 평균기온 전망(AP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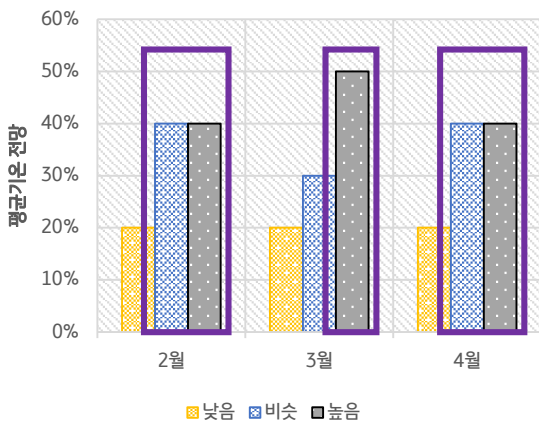
자료 : APCC

그림10. 2~4월 동아시아 강수량 전망(AP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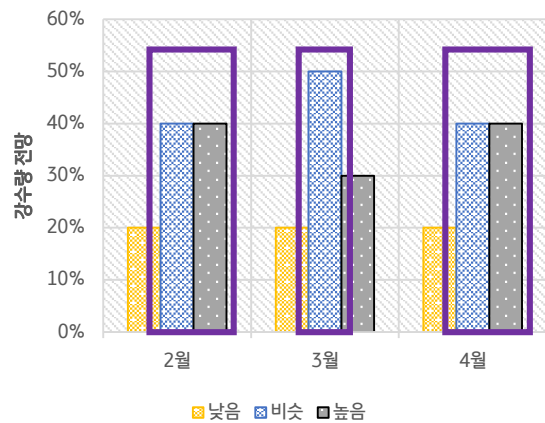
자료 : APCC

그림11. 2~4월 국내 평균기온 전망(기상청)



자료 : 기상청

그림12. 2~4월 국내 강수량 전망(기상청)



자료 : 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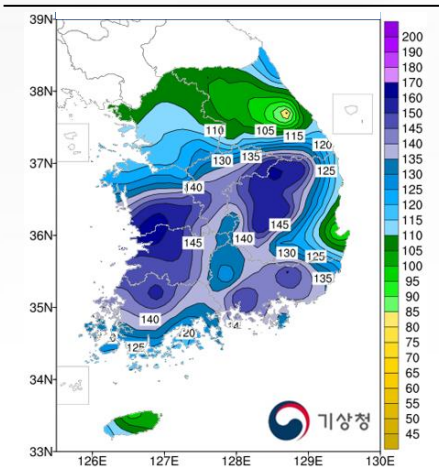
### ■ 산불 위험 전망

#### 산불 위험 전망 :

- '23년 12월 관측 이래 가장 많은 강수량이 기록 되는 등 전국이 비교적 습윤한 상태
- 평년과 비슷한 강수 발생시 2~4월 기상가뭄은 없고, 산불 위험 적을 것으로 전망
-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인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산불 발생 최소화 노력 필요

- '23년 전국 연강수량은 1,746mm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비가 내린 해였으며, 12월에는 관측 이래 가장 많은 강수량(102mm)을 기록하였다.
- 이로 인해 최근 6개월('23년 8/2~'24년 2/1)간의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 대비 120%에 달해, 전반적으로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23년 산불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충남 지역은 평년 대비 123%, 최근 10년간 산불 피해가 가장 컸던 강원과 경북은 각각 111%, 131%로 기상가뭄 발생 가능성이 낮다.
- 산불 피해가 집중되는 2~4월에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강수 발생시 기상가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23년 대비 산불 위험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대부분의 대형 산불이 입산자나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에 의해 발생함을 고려할 때, 건조한 지역에서의 산불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철저한 주의가 여전히 필요하며 적극적인 조치와 교육을 통해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13. '23년 강수량 평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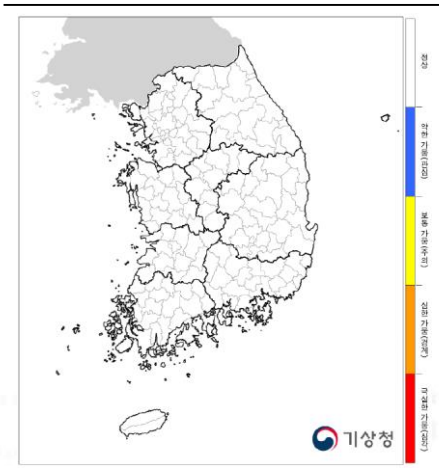
자료 : 기상청

표3.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 현황

구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수량 (mm)	713.2	605.8	729.3	704.5	722.1	717.6	594.2	684.7	858.9	562.3
평년값 (mm)	593.7	573.2	649.2	561.2	584.0	608.4	594.7	527.4	635.8	771.0
평년대비 (%)	120	106	111	126	123	118	100	131	136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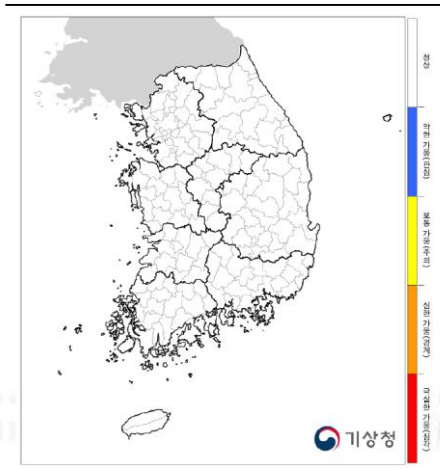
자료 : 기상청

그림14. 기상 가뭄지도(2월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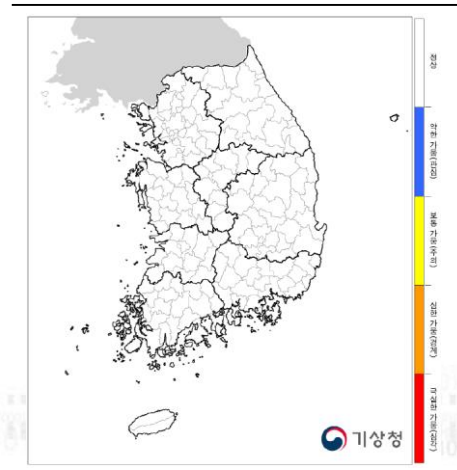
자료 : 기상청

그림15. 기상 가뭄지도(3월말 전망)



자료 : 기상청

그림16. 기상 가뭄지도(4월말 전망)



자료 : 기상청





## ESG 정보 공시 동향과 물리적 리스크

### 1. ESG란??

#### ■ ESG의 정의

ESG :

- Environmental(환경)
- Social(사회)
- Governance(지배구조)

-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한다.
- **환경(E)** 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탄소배출 이슈이며, IPCC<sup>1)</sup>에 의하면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로 제한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
- **사회(S)** 부문에서는 기업의 인권보장과 데이터 보호, 다양성과 포용성,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동반성장 관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환경과 사회 가치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이사회 구축이 필요하며, 부정부패와 뇌물을 방지하고 기업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 ■ ESG 정보 공시의 개념

ESG 정보공시 :

- ESG 성과·정보를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에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자본시장에 공시하는 개념
- 정보공시 의무화·표준화 진행

- ESG 정보공시는 기업이 경영활동에 대한 재무적 성과를 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하는 것과 같이 ESG 성과와 같은 비재무적 정보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자본시장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직의 성과를 측정 및 공개하고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을 약속하는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 기업은 당면한 ESG 리스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당 분석 결과와 대응 방안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 이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와 그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표1. 주요 ESG 정보공시 표준 및 규제

국가	공시규제	의무화	적용 대상	적용 시점
유럽연합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의무	EU 대기업 & 일부 외국기업	FY24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의무	SEC 상장사	미정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ESG 정보공시	의무	국내 상장사	FY26 ~

자료 : EU, SEC,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그림1. ESG 정보공시 기관별 의무화 도입



자료 : KPMG, ESG 심포지엄 발표자료 발췌

1)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약어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을 의미



### 2. 주요 국내외 ESG 공시 동향

#### ■ 유럽

유럽 :

- ESRS 산업 부문별  
지표 채택 연기 및 CSRD<sup>1)</sup>  
적용 대상 조정, 가이던스  
초안 공표

- EU는 2021년 4월 CSRD를 발표(2023년 1월 발효)하여, EU 내 기업과 EU에 영향을 주는 Non-EU 기업들에게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CSRD는 NFRD(비재무보고 지침,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를 보완한 개정안으로 지속가능성 정보가 재무정보와 동등한 수준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타 ESG 정책과의 연계성을 보완하여,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일관성, 접근성, 비교가능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CSRD로 개정하였다.
- CSRD에 따르면 EU에 지사를 두거나 수출을 하는 기업은 CSRD가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 공시를 해야 한다.
- 국내 기업이라 하더라도 EU에 대기업 또는 상장 중소기업을 갖고 있는 경우 공시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들의 공급업체라면 CSRD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 국내 기업(Non-EU 모회사)은 2026년(회계연도 2025년)에 자발적 공시할 수 있으며, 2029년(회계연도 2028년)부터는 의무적으로 CSRD를 적용하여 공시해야 한다.
- 국내 기업 중 유럽에 수출 및 투자를 계획 중인 대규모 기업들은 CSRD의 적용 대상에 해당될 수 있기에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2025년부터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표2. EU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 현황 및 한국기업 적용 시점

	FY24	FY25	FY26	FY27	FY28	FY29
공시대상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기존 NFRD 적용기업 (직원수 500명 이상 EU상장사, 은행, 보험회사)	→					
EU 규제시장 상장 (Regulated Market) Non-EU 지배기업	→					
EU 내 설립 대기업 (Non-EU 기업의 EU 소재 중속기업 포함)		↓	→			
EU 내 상장 중소기업 (초소형 상장기업 제외)			→			
EU 내 일정매출액 초과 Non-EU 지배기업					↓	→

↓ 한국기업 적용 시점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EU 수출기업을 위한 공시기준 가이드북

1) CSRD :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기업이 공시한 정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침



### ■ 미국

미국 :

- SEC 기후공시 및 기후관련 공시 규칙 입법 연기

- 2023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ESG에 대한 정치 이슈화 및 부정적 시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비즈니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및 ESG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2022년 3월 기후 관련 공시 강화 및 표준화 규칙 제정을 제안하였다.
- 상장 대기업의 온실가스 직·간접배출량에 관한 2023년의 정보를 2024년에 공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장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및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 그러나 2022년 입안될 예정이었던 SEC 기후공시 규칙은 현재까지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24년 4월에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 대한민국

대한민국 :

-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지연
- 기업의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을 감안하여 공시 의무화 연기('26년 이후)

- 2021년 금융위원회의 ESG 공시 의무화 계획이 발표되고 2023년 6월 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확정되자 국내에서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 그러나 2023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주요국 ESG 공시 일정 및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ESG 공시 도입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할 것임을 ESG 금융추진단 제 3차 회의에서 밝혔다(2026년 도입시 : 2025년 정보를 2026년에 공시).
- 금융위원회는 해외의 제도를 참고하여 적합성을 높이고자 ESG 공시 의무화를 연기하였으나, 2024년 1분기 말부터 2분기 사이에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들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림2. 신규 ESG 정보 공시 규제 및 주요 특징



자료 : KPMG, 각 기관 공개자료 재가공

1)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 3. 주요 공시 리스트 및 물리적 리스크

#### ■ 주요 정보공시 항목

ESRS는 일반기준과 주제별 기준(환경, 사회, 지배구조)으로 구성된 공시기준 제시

기업은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명시하여 공시

-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는 복잡하고 어려운 지침인 CSRD를 기업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고 자세하게 서술된 공시 기준이다.
- ESRS는 Set1과 Set2로 구성되어 있는데, Set1은 기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산업군의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기준으로 일반 기준과 주제별 기준(환경, 사회, 지배구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Set2는 산업별 기준과 非EU기업, 상장 중소기업 등 세분화된 조건에 따른 기준들로 '26년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 ESRS Set1의 일반 기준 중 ESRS 1은 기본적인 원칙을 담고 있고, ESRS 2부터 본격적인 공시사항을 담고 있다.
- 주제별 기준은 환경(기후변화 등), 사회(자사 근로자 등), 지배구조(비즈니스 활동)으로 구분되어, 각 영역에 해당하는 주제들의 내용을 담고 있다.
- ESRS E1의 공시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화석연료기반의 경제구조에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의 사업 전환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 또한 기업은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 사용 등과 같은 사항이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 방법에 대해서 명시한 정책을 공시해야 한다.
-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Scope 1, 2, 3으로 구분하여 공시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순이익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를 계산하여 공시해야 한다.
- 물리적·전환 리스크, 기후 관련 기회로 인한 잠재적인 재무 영향을 예상하여 공시해야 한다.
- 본 고에서는 환경분야(E) 중 ESRS E1에 해당되는 기후변화 주제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3. ESRS Set 1 기준 항목



자료: 법률신문



### ■ 물리적 리스크의 정의 및 동향

물리적 리스크 :

-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을 의미함
- 물리적 리스크의 재무적 영향 평가 공시 의무화 예정

- 물리적 리스크는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을 뜻한다. 예를 들어, 해수면 상승 및 홍수로 인한 사업장 침수 피해, 가뭄으로 인한 용수 구입비용 상승 등이 있다.
- TCFD 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시나리오상 조직 전략과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Strategy)에 대한 항목을 작성하는데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기업에서 발간한 TCFD 보고서를 보면 기후 시나리오 기반 재무영향 공시 비율이 매우 저조(약 7%, 2022 기준)하며 잠재적 재무영향에 대한 정성적 서술이 대부분이고 정량적 지표 제시나 피해규모 산정은 제한적이다.
- 최근 기업의 사업모델, 밸류체인, 재무제표의 단가, 중장기적 기후 리스크 시나리오 기반 평가 공시 요구가 의무화 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 물리적 리스크 평가 방법

- 최근 환경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 대책수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상 조직 전략과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 정량적 지표 제시나 피해규모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표3. 기후 공시 항목 및 공시 난이도

		매우 쉬움	다소 쉬움	다소 어려움	매우 어려움
지배구조 (Governance)	•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13%	59%	24%	2%
	•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 및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13%	57%	26%	3%
경영전략 (Strategy)	• 단기중장기적 관점에서 확인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4%	36%	47%	12%
	•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가 조직전략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2%	12%	51%	32%
	• 기후변화 시나리오상 조직 전략과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1%	8%	36%	52%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 기후변화 관련 위험의 식별 및 평가를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4%	44%	41%	9%
	•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 프로세스	4%	36%	49%	10%
	• 기후변화 관련 위험의 식별, 평가 및 관리 프로세스 통합관리	3%	34%	43%	17%
지표·목표 (Metrics & Targets)	•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	5%	36%	39%	18%
	• Scope 1,2,3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15%	49%	28%	7%
	• 온실가스(Green House Gas) 배출량 및 관련 위험	4%	18%	28%	43%
	•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목표 및 목표대비 성과	4%	23%	43%	26%

자료 : TCFD status report 2022



### 물리적 리스크 평가 :

-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및 사업 추진
- 물리적 기후 리스크 평가를 위한 분석 체계 연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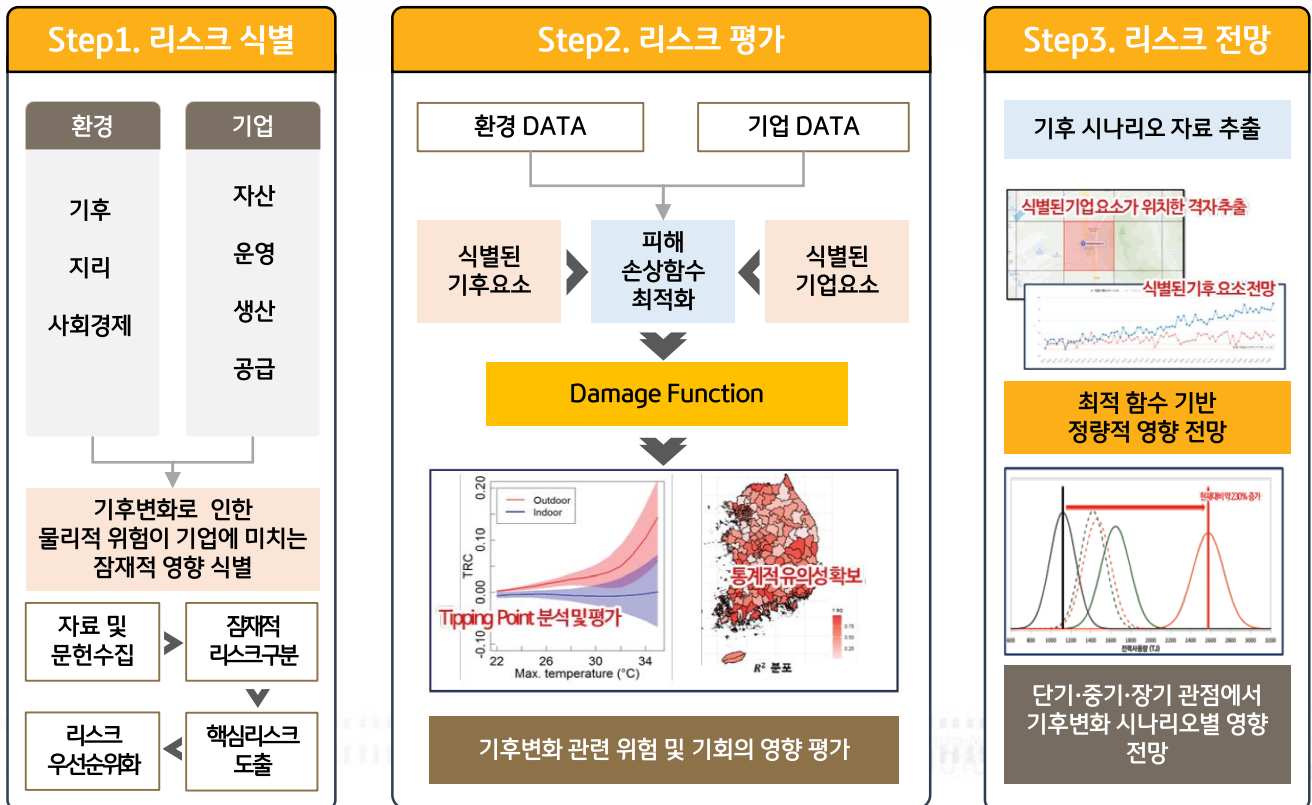
- 한국환경연구원(KEI)은 기후 정보 및 리스크 분석 방법론의 부재로 인해 해외 컨설팅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계를 위한 지원도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물리적 리스크는 크게 ‘리스크 식별’, ‘리스크 평가’, ‘리스크 전망’ 단계로 분석·평가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기준과 분석 기법이 필요하다.
- ‘리스크 식별’ 단계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이 기업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식별하기 위하여 업종별 대리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 ‘리스크 평가’ 단계에서는 환경 데이터와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리지표별 피해손상함수 (Damage Function) 분석이 필요하다.
- ‘리스크 전망’ 단계에서는 리스크 평가에서 산정된 피해손상함수와 기후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정량적 영향을 전망한다.

표4. 물리적 리스크 항목

구분	온도 관련 위험	바람 관련 위험	물 관련 위험
만성	대기, 담수, 해양수의 온도 변화	바람 패턴의 변화	강수 패턴 및 유형(비, 사락눈, 빙설)의 변화
	폭염	-	강우 혹은 수문학적 변동성 증가
	기온변동성 증가	-	해양 산성화
	영구동토층의 해동	-	담수 및 지하수로의 염분 침입, 해수면 상승
급성	폭염	열대성 저기압(사이클론, 허리케인, 태풍)	가뭄
	한파, 서리	폭풍(눈보라, 먼지폭풍, 모래폭풍 등)	호우(비, 사락눈, 빙설)
	들불, 산불	용오름(토네이도)	홍수, 범람(해안, 하천, 지하수), 빙하호 폭발

자료 : EU 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가이드 발췌

그림4. 물리적 기후 리스크 분석 체계



자료 : 한국환경평가연구원 자료 발췌 및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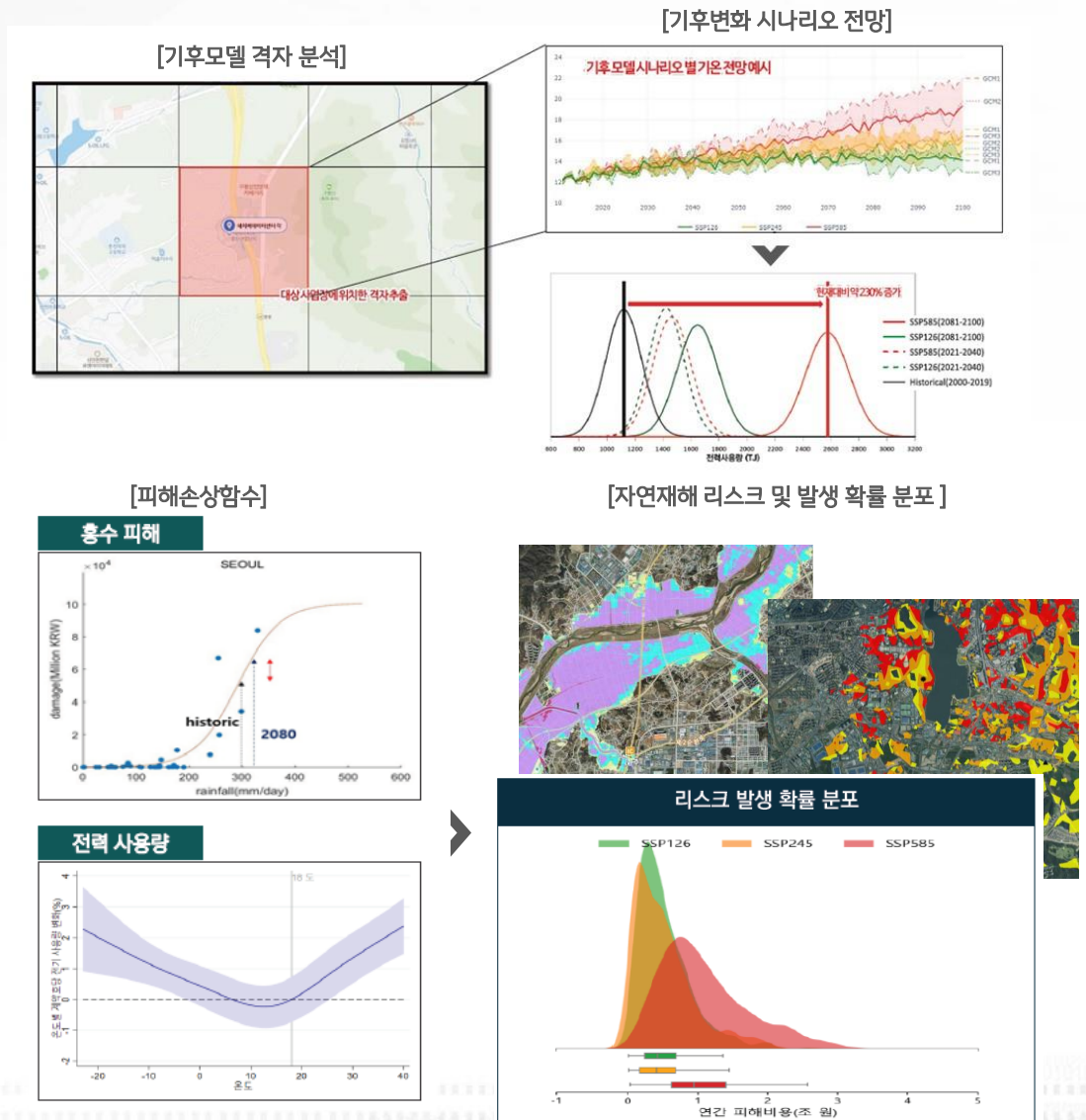


###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기후 리스크 분석(안)

- 기후변화 시나리오 선정
- 리스크 지표 식별
- 피해 손상 함수
- 리스크 발생 확률 분석
- 정량적 재무 영향 평가

- 기후 리스크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해야 하며,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에어로졸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기후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온실가스 농도, 기후변화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산출한 미래 기후 전망정보를 의미한다.
- 국내에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IPCC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주로 사용하며, 이는 전지구 시나리오 모델(해상도 격자 135km)을 남한 상세시나리오(해상도 격자 1km)로 변환하여 제공되고 있다.
-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지표별 피해손상함수를 활용하여 기업의 정량적 물리적 리스크 영향을 전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여전히 미래 기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나 ESG 정보 공시에서 요구하는 정량적 재무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데이터 수집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5. 물리적 리스크 평가를 위한 분석 기법(예시)



자료 : 한국환경평가연구원 자료 발췌 및 재가공



### 4. 2024년 주요 ESG 이슈 전망

#### ■ ESG 공시제도 연기에 따른 주의

ESG 공시 연기에 따른 투자자와의 입장차이 발생

ESG 공시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 주의 필요

- 국내 ESG 공시제도 의무화가 연기되었으나, 기업들은 기존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표준을 이용하여 발간하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ESRS 및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함으로써 향후 의무화 될 ESG 공시제도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
- 이로 인해 본격적인 공시규제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ESG 공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자와 투자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 최근 MSCI<sup>1)</sup>는 기업의 기후 정보 확인 시 ‘거짓된 배출량 공시’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예외 조항을 이용하여 특정 화석 연료 자산에 계속해서 투자하면서도 해당 탄소배출량을 자회사 등에 귀속시킴으로써 이를 공시에 누락시켰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기업은 ESG 정보를 공개할 때 공시항목에 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 ■ 공급망 관리 및 ESG 평가 체계화

해외 ESG 선도기업들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 요구 증가

- 해외 기업으로부터 공급망 실사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 공급망 평가 정책 수립 및 공급망 관련 정보 식별·분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최근 CSRD는 공급망 실사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역시 밸류체인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사업장의 ESG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ESG 위험을 중대성 평가 목적으로 연 1회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표5. 신규 공시 규제 대응 이슈 및 쟁점사항

공시기준 주요 특징	핵심 이슈	주요 내용
공시주체 및 보고/포함 범위 확대 요구	연결 기준 공시 필요	• 재무제표 연결대상 레벨의 ESG 데이터를 일관된 기준으로 취합할 것을 요구
	가치사슬 Data 취합 필요	• 공급망 이슈, 제품 탄소정보 등 가치사슬 전반(Upstream 및 Downstream)의 중요한 ESG 데이터를 취합할 것을 요구
공시내용 및 품질 고도화 요구	중대성평가 범위 확대 및 기준 정교화 필요	• 연결/가치사슬 범위에 걸쳐 보고대상 이슈를 선정하는 중대성 평가 수행할 것을 요구 • ESG이슈의 재무적/사회환경적 영향을 합리적인 방법론에 따라 분석하고 중요 이슈를 선정하는 임계점/근거 수립을 요구
	기후변화의 재무제표 영향 분석 고도화 필요	• 기후 리스크/기회의 현재/잠재 재무영향을 재무상태/손익영향 또는 각 계정 별 영향 관점에서 추정할 것을 요구
	제3자 인증/감사 대응 필요	• ESG 데이터를 생성-집계-승인하는 내부 프로세스와 중대한 데이터의 누락 여부를 점검하는 내부통제/감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 • 경영진/이사회 레벨에서 ESG 데이터를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

자료: KPMG 심포지엄 발표자료

1) MSCI: 미국 모건스탠리증권(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 정책 동향

산업 및 안전관련 정부의 정책정보를 제공합니다.





## 1. 우리동네 자주 발생한 재난은?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

#소방안전

#빅데이터플랫폼

소방청은 3년간의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지난 4월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이 본격 운영 8개월 만에 국민 생활 밀접정보 등 누적 3,101건의 정보를 개방하며 소방정보 활용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플랫폼 구축사업에 선정돼 2020년부터 3년 동안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 등 19개 기관이 참여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소방 관련 기업은 물론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소방데이터를 생산하고 유통하기 위해 플랫폼은 9개의 센터 (화학재난·스마트시티·소방산업기술·재난보험·IoT정보기술·AI화재위험 데이터센터, 소방엔지니어링 ICT센터, 지하매설배관 안전관리 빅데이터센터, 스마트소방지능센터)에서 수집한 3,101건의 데이터를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가공하고 융합하여 제공한다. 주로 제공하는 정보는 소방산업 기술정보, 지역별 건축물 특성 및 주요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계도면, 화재위험 요소 등이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참고하여 소방산업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신사업 제안 및 제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일반 국민들은 ‘위치기반 언론보도 사고자료’ 및 ‘우리동네 화재안전지수’, ‘침수위험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거주 지역의 주요 발생 재난 유형과 발생 시기,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다.

- ✓ 소방안전빅데이터 플랫폼(www.bigdata-119.kr) 접속 ⇨ 데이터 서비스 ⇨ ‘위치기반 언론보도 사고자료’ · ‘우리동네 화재안전지수’ · ‘침수위험 알림 서비스’ 이용 가능

[소방청 2023년 12월 27일 보도자료 \(원문보기 클릭\)](#)

## 2. 대형 창고형 위험물 옥내저장소 238개소 대상 긴급 소방검사 추진

#위험물저장소

#소방검사

소방청은 지난 1월 9일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서 발생한 위험물 저장창고 화재와 관련하여 전국 대형 창고 형태의 위험물 옥내저장소에 대한 긴급 소방검사를 추진한다. 현재, 창고 형태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지정수량 1천배 이상의 옥내저장소는 전국에 238개소가 있다. 이러한 대형 위험물 옥내저장소는 다량의 위험물 등 유해화학물질이 보관되어 있어 화재 발생시 확산 속도가 빨라 진압이 쉽지 않다. 특히, 내부에 보관 중인 위험물이 연소되면서 급속도로 화재가 성장하며, 이때 화재로 발생하는 유독성 연기는 시야확보는 물론 대피를 방해하여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며, 화재진압에 나서는 소방대원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소방청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2월 23일까지 1개월 간 전국 소방서에 검사반을 구성하여 전국 대형 위험물 옥내저장소 238개소 대상 긴급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각 소방서 검사반은 현장을 방문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과 근무 실태, 옥내저장소 내 위험물 저장·취급의 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저장시설 내부의 열풍기, 전기시설 등 적정 여부, 위험물 정기점검 허위 작성 여부 등을 집중 검사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 물류 창고 형태로 위험물을 보관하는 옥내저장소에서 화재 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계인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소방청 2024년 1월 22일 보도자료 \(원문보기 클릭\)](#)

### 3. 연기로부터 안전하게 특별피난계단 화재안전성능 강화

#위험물저장소

#소방검사

소방청은 11층 이상 고층건물의 특별피난계단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개정안을 26일 발령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는 총 193,999건으로 12,085명의 인명피해(사망 1,552, 부상 10,533)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기 또는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한 경우는 37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3.7%를 차지했고, 부상은 3,360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3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피난경로인 계단실의 안전성능을 강화함으로써 연기 및 유독가스의 유입을 차단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부속실 내 과압을 해소하기 위해 과압방지 조치 의무화
  - 부속실 내 공기압력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과압으로 인하여 유사시 방화문이 열리지 않을 우려가 있어, 이러한 과압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함. 단, 과압발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압방지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 급기댐퍼의 재질도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기준에 준하도록 함
  - 자동으로 차압을 조절하는 방식이 아닌 급기댐퍼의 재질도 자동차압급기댐퍼에 준하는 성능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 ✓ 덕트를 감싸는 단열재의 재질을 불연재료로 할 것을 법적으로 명확히 명기
  - 덕트 외부에 설치하는 단열재를 「건축법 시행령」에 적합한 불연재료로 명확히 규정
- ✓ 덕트 내 풍속의 상한 규정
  - 덕트 내의 풍속은 15m/s 이하로 제한하여 유사시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안정성 확보

[소방청 2024년 1월 26일 보도자료 \(원문보기 클릭\)](#)

### 4. 해경청, 선박 화재 감식 전문역량 및 대응체계 강화

#선박화재

#선박화재감식

해양경찰청은 “선박 화재에 대한 신속대응과 증거물 확보 및 보전 등 감식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역량강화 및 대응체계 개선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선박화재는 육상 화재와는 달리 해상 이동수단 및 주거시설이 포함된 병합구조로 전자기기·가스·유류 등 생활용품 적재와 사용 용도에 따라 화재사고 발생 시 소화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부두 정박 시 선박이 근거리로 계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화재발생 시 확산위험이 있고, 증거물 훼손 등 원인 규명이 어렵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화재 원인 및 관련 데이터를 수집, 감식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화재 시 감식활동을 위한 화재전담팀을 구성하고 광역지원 FSO(First - Support - Overview)팀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 인근 경찰청, 소방청 및 가스·전기 안전공사 등을 비롯한 관련 학회·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속·정확한 감식활동 및 검증/지원/공유 체계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은 오는 8월에는 미국 화재폭발조사관(CFEI) 위탁교육 과정(방재시험연구원)을 개설, 화재조사관의 신뢰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소방학 및 발화부, 물증, 화인조사, 해양, 건물, 자동차 화재 패턴 및 분석·대응, 사고원인, 책임, 실패분석 및 해석Tool, 화재관련 인간행동, 정보원, 조사계획, 현장기록 등이다.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화재·폭발 등 재난 환경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 쇄신을 단행, 재난대응 중심의 인력확보·구성과 화재감식 대응체계 구축 등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2024년 1월 29일 보도자료 \(원문보기 클릭\)](#)

## 5. 법정부적으로 안전제도 발굴·개선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

#24년개선과제

#안전사각지대

행정안전부는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2023년 하반기에 시설안전, 산업, 생활·여가 등 총 7개 분야에서 2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확정하였으며, 2024년부터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농식품부, 산업부, 소방청 등 총 10개 부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안한 의견을 수용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 ✓ 침수위험 및 저지대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침수 및 인명피해 예방(국토부)

  -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 강도가 강해지고 잦아짐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는 도로터널 관리지침에 따라 2등급 이상의 터널에만 진입차단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되어 있었음. 이에, 2024년 상반기까지 「도로터널 방재·환기기설 설치 및 관리 지침(예규)」 개정을 통해 침수위험 및 저지대 있는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함. 이를 통해 집중호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하차도 차량 출입을 통제하여 차량 침수와 인명피해 예방 강화
  - (현행) 방재2등급(1km이상) 설치 → (개선) 등급 외 지하차도 중 침수위험 지하차도
- ✓ 데이터센터를 주요 통신시설 A등급으로 지정하여 관리 강화(과기부)

  -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22.10.15.) 이후,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주요 사업자로 포함되었으나, 분류기준 미비로 데이터센터는 미포함 됨에 따라 안전관리 공백이 우려됨. 이에, 2024년까지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전산실 바닥면적 22,500㎡이상, 수전설비용량 40MW이상) 이상인 데이터센터를 중요통신시설 A등급으로 규정하여 재난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
- ✓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제품으로 인한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 강화(산업부)

  - 에탄올 화로는 KC안전기준이 없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가 있어, 화로가 넘어지거나 연료 주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됨. 이에 2024년까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
- ✓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작업기준을 신설하여 중독·질식 등 안전사고를 예방(고용부)

  - 보온양생 작업 시 갈탄 난로 등의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 이에,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에 지켜야 할 안전보건 기준을 2024년까지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고시)」에 추가 반영하여 양생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독·질식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
- ✓ 루지 체험장 세부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체계 강화(문체부)

  - 국민이 이용하는 레저시설인 루지 체험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설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사업장마다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었음. 이에, 2024년 상반기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고시)」 개정을 통해 루지 체험장 시설 특성을 반영한 세부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유원시설 이용객과 사업자 등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행정안전부 2024년 1월 26일 보도자료 \(원문보기 클릭\)](#)

## 6.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액화수소

#액화수소플랜트

국내 최초의 상용급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이 1.31.(수) 두산에너지빌리티 창원공장에서 개최되었다. 동 플랜트는 두산에너지빌리티, 경남도, 창원시가 공동투자하여 구축되었으며, 하루 5톤, 연간 최대 1,825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하여 인근 연구기관, 기업, 수소충전소 등에 공급하게 된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1/800까지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은 액화수소는 수소의 대량 운송과 수소상용차 보급 촉진 등의 핵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간 국내 사용사례가 없어 안전기준이 부재한 점을 감안,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및 기자재 부품 국산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의 액화수소 운송·저장설비 등에는 국내 기술이 활용되었으며, 동 플랜트와 연계하여 국내기업이 개발한 액화 트레일러를 함께 운영하게 된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지자체, 기업, 정부 출연기관 간 액화충전소 구축 및 수소버스 보급·활용, 액화수소 공급·구매 관련 업무협약 등도 체결되었다.

- ✓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사업
  - 사업내용 : 천연가스 개질을 통한 5톤/일 규모의 액화수소 생산설비 구축
  - 위 치 :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558-1 (두산중공업 부지 내, 19,750.2㎡)
  - 주관기관 : 하이창원(주) ※ 창원산업진흥원·두산에너지빌리티 합자 SPC
  - 사업기간 : 2020.03. ~ 2052.12. (구축 및 운영 기간 포함)
  - 총사업비 : 950억원 (지방비 100억원, 민간 680억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1월 31일 보도자료 \(원문보기 클릭\)](#)

## 7. 개인형 이동장치(PM) 화재 등 잠재 재난위험을 사전에 발굴하여 예방한다

#잠재재난위험분석

#개인형이동장치화재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잠재적인 재난위험 요소에 대한 두 번째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하여 위험 요소를 탐색하고, ‘위험요소 평가·선정위원회’의 위험성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2건의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선정하였다.

- ✓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 위험
  - 최근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내장된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이 있음. 리튬이온 배터리는 과충전, 물리적 충격 등으로 손상이 발생하면 발화하거나 폭발할 수 있으며, 배터리에 발생한 높은 열(열 폭주)로 인해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염이 주변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있음. 특히,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중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초동대응이 어려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 및 휴대에 관한 규정 정비 등 관련 대책이 필요
- ✓ 돌발가뭄으로 인한 여름철 산불 위험
  -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후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도 여름철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고 있음. 여름철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는 폭염 등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는 돌발가뭄이 지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여름철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돌발가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그간 산불이 자주 발생했던 봄과 가을철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예방 자원을 집중해왔기 때문에 여름철 대형산불 발생과 산불 연중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

[행정안전부 2024년 2월 1일 보도자료 \(원문보기 클릭\)](#)

# 법령 동향

주요 고객 영위업종 등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제정보를 제공합니다.





## 발의 / 입안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국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행위시법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변경·강화된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선택하여 기존 건축물 등에 소급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량권을 축소하고 통일적으로 적용토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소방청장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체계와 같이 대통령령에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 적용을 받는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가. 소화기 등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경우 강화된 기준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재량적으로 적용하였던 것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함(제13조)
- 나.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법령체계를 일반적인 입법형식과 같이 정비하여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위탁사무 중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기술적 업무에 대하여 위탁기관에서 청문을 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를 확대함(제50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국회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유소 등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의 흡연 시 화재·폭발 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제조소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제재 규정이 없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에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가.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19조의2제1항 신설 등)
- 나.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제19조의2제2항 신설)
- 다.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금연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19조의2제3항 신설)

## 입법예고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반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내진설계를 하여 설치하나, 이보다 위험도가 높은 위험물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다툼이 있는 바 이를 해소하고자 내진설계 의무를 명시함. 또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기검사를 실시한 후 부적합한 사항을 수검대상의 관계인에게만 통보하도록 한 결과 관계인의 개선 노력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부적합한 사항을 통보하는 대상에 소방서장을 추가함. 자동차의 충돌로부터 이송취급소의 배관 및 그 지지물을 보호하는 설비의 기술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해당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